

【부 령】

- 국토교통부령제1412호(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 4
- 문화체육관광부령제574호(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 7

【고 시】

-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-0571호(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) 15
-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-0573호(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(KS_C_NEW_2024_4583 등 4종)) 16
-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-0580호(한국산업표준 개정) 18
-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-0581호(한국산업표준 확인) 20
-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-0583호(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(KS C IEC TS 62607-5-1 등 3종 확인)) 21
-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-0585호(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) 22
-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-0586호(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) 24
- 국가유산청고시제2024-0086호(사적 「상주 옥동서원」, 「칠곡 가산산성」 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) 25
- 국가유산청고시제2024-0087호(「고성 송학동 고분군」 국가지정문화유산(사적) 추가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) 29
- 국가유산청고시제2024-0093호(사적 「고양 서오름」 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(조정)) 35
- 국가유산청고시제2024-0094호(「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」 자연유산(명승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) ... 49
- 국방부고시제2024-34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) 55
- 국토교통부고시제2024-676호(제5차 국토·국지도 건설계획('21~'25) 변경) 56
- 국토교통부고시제2024-677호(대구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) 60
- 국토교통부고시제2024-679호(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109.8k 부 근)) 61
- 국토교통부고시제2024-681호(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) 62
-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-16호(산림보호구역(수원함양보호구역) 지정 고시) 64
-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-20호(동부지방산림청 숲길 지정해제 고시) 65
-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-100호(시설항로표지 신설(송문항동방A호등부표 외 1기)) 67
- 법무부고시제2024-587호(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) 68
-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-248호(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(서귀포외항방파제등대 등 25기)) 73
- 산림청고시제2024-117호(국립산음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) 76
-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-28호(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) 78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681호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0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

1. 제한대상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량
2. 제한기간 : 시행일로부터 2년간(2024. 12. 1. ~ 2026. 11. 30.)
3. 제한방법 :
 - 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(2024. 12. 1. ~ 2026. 11. 30.)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(2024. 12. 1. ~ 2026. 11. 30.)
 - 1)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신규 등록 또는 기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일 것
 - 2)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증차는 최대 42대까지 허용
 - 3)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향후 대·폐차 시 수소전기자동차로만 가능하며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3조제3항제3호*에 따라 대·폐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전세버스조합이 아닌 관할 지자체에 신고**

* 등록 또는 증차 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대폐차는 관할 지자체가 신고 수리

** 이번 신규 등록 및 증차 수소버스 외 차량의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는 기존대로 전세버스조합이 수행

- 4) 협동조합의 경우 해당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「여객자동차

운수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양도 불가

- 5) 기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양도 불가하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는 가능

※ 수소전기자동차의 예외적 신규 등록 및 증차 허용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별도 통보

4. 시 행 일 : 2024. 12. 1.